**IT융합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1장**

제1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정진하며, 전문인 으로써의 지역사회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 학생회(이하“원우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경연

   3. 회원권익을 위한 대내외 학술활동

   4. 간행물 발행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IT융합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단, 회비 미납자는 회원자격 상실)

**제3장 임원**

제7조(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이사 2인(재무, 기획)

 4. 감사 1인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회장은 원우회 회원중 2학기 이상 남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 선거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총무 및 이사,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한다.

   2. 임원의 공석시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보선으로서 충원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업무 및 회의를 관장한다.

   2. 총무는 본 회의 각종회의, 원우회 수첩 제작, 행사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무 관리업무, 교학팀 관련 업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기획이사는 본 회의 업무기획, 외부기관 상호 교류, 원우회 자체행사, 신입생 환영회 및 정기총회를 관장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11조(고문)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전대회장)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12조(선거공고일) 원우회장은 차기 원우회장 선거일 20일전에 선거일시, 선거장소 및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 원우회장 후보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우회장이 된다.

제15조(선거결과) 원우회장 선거 및 당선인 확정은 임기 종료이전에 완료 하고, 후보가 1인일 때는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5장 총회**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9월 중에 개최하고 일주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원우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의 수립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임원회**

제19조(구성) 원우회의 임원회는 회장, 총무, 이사(기획, 재무), 감사로 구성한다.

제20조(자격) 임원은 1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회원으로 한다.

제21조(임원) 임원은 1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회원으로 한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제22조(수입 재원)

   1. 본 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원우회비   ② 특별회비   ③ 찬조회비   ④ 기타 재원

   2. 원우회비는 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여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한다.

   3.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하여 원내 및 원회원으로 징수한다.

   4. 찬조회비는 회원 및 기타 모든 이로부터 희사 받을 수 있다.

제23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에서 관리한다.

제24조(예산 및 집행) 예산은 학기 초까지 임원회에서 자체 사업비 및 제반 활동 경비에 대하여 사업별 항목별 심의 조정 후 IT융합대학원의 자문을 얻어 임원회의에서 편성 및 집행한다.

제25조(결산보고) 본 회의 결산 보고는 년 2회(학기말) 실시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27조(경조비)

경조비 지급 기준내역

|  |  |  |
| --- | --- | --- |
| **항 목** | **경조금** | **비 고** |
| 결혼 | 본인 | 10만원 | 1인 |
| 조의 |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 명의의 화환 또는 경조금중 선택 가능함.

**제8장 회칙개정**

제28조(개정) 회칙의 개정은 제16조 2항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제29조(발의) 개정 발의는 임원단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첨부하여 발의하여야 하며 개정안 결정여부는 제18조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